



제 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의 지정·설립 등 >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35호)

2025.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광역도서관위원회 심의사항에 장애인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항 포함 (안 제17조제2항제2호)	2
2.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의 지정·설립 등(안 제26조의2 신설 등)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희용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4. 12. 5.

다. 회 부 일 :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도 단위의 장애인도서관이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광역도서관위원회 심의사항에 장애인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항 포함(안 제17조제2항제2호)

가. 개정안 요지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 및 이용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7조제2항제2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u>사항</u>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 <u>사항(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 및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u>

3. (생략) ③ ~ ⑦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17조¹⁾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 내의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현행법 제6조²⁾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 및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1) 「도서관법」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 및 이용편의 제공”을 포함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정책 수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행법 제6조 및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권 보장에 대하여 지자체의 시책 수립 및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현행법에 일부 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한국도서관협회의 의견이 있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별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한국도서관협회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법 제6조제1항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³⁾에 따라 공공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도서관은 의무적으로 무장애 인증을 받고 독서보조기기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2의2]

대상시설	
7.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대상시설	의무용품	권장용품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 포함)

2.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의 지정·설립 등(안 제26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시·도는 관할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책 수립 및 관련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 및 제작지원·이용 서비스 제공,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보장 및 이용편의 제공,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 국가는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에 대한 건립비 지원 및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27조).
-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지역 안의 광역대표도서관 또는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8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절 광역대표도서관</u> <u><신 설></u>	<u>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및 광역 장애인대표도서관</u> <u>제26조의2(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②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작·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u> <u>2.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u> <u>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u> <u>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u> <u>5.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u>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①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9.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그 밖에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 등의 건립비 등 보조) ① -----광역대표도서관 또는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② -----광역대표도서관 또는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 등을 위

도서관자료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u>광역대표도서관</u>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한 도서관자료 제출) ① ----- ----- ----- ----- ----- -----<u>광역대표도서관</u> 또는 <u>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u>에----- -----. ②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4)에 따라 시·도는 관할지역의

- 4) 「도서관법」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설립·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시설·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2.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①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시책 수립·시행 및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 하여야 하고,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건립비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보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할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해야 함.

○ 한편, 현행법 제24조⁵⁾는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국립 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도서관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⁶⁾,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5) 「도서관법」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작·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4.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11.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도 단위의 장애인도서관이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광역대표도서관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대표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건립비·사업비 지원 근거 및 지자체가 발행한 공공간행물의 납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도별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새롭게 지정 또는 설립하는 것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및 광역대표도서관과의 업무 효율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2022)에 따르면 도서관 면적 2,500㎡~5,500㎡ 규모의 공공도서관 1개관의 건립비는 약 1백억원 이상⁷⁾으로, 시·도별 광역대표도서관도

6)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장애인도서관 수는 2018년 36개관, 2020년 32개관, 2023년 31개관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단위: 개관)

연도	2014	2016	2018	2020	2023
장애인 도서관 수	42	44	36	32	31

7) [참고 1. 공공도서관 건립 시 비용추계] 참조

아직 건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⁸⁾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게 될 경우 국가 예산 투입 및 지자체 재정 부담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과 같이 지역 공공간행물의 납본 및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은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어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신규 설립할 경우 도서관 정책이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막대한 예산 투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별도로 두기보다는 광역대표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시책 수립 역할을 함께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고, 지역내 공공도서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함께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서울도서관·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및 충남도서관⁹⁾**은 현행법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서비스 제공 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광역대표도서관이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협력하여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8) 17개 시·도 중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새롭게 신설하기 위하여 건립 중에 있음.([참고 2. 17개 시·도 광역대표도서관 현황] 참조)

9)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3개 도서관은 각 시·도의 광역대표도서관임.

시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일반 이용자와 장애인을 분리하지 않는 사회 통합적 관점의 정책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서 현행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국도서관협회는 현행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도 미흡한 바, 별도의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추가 지정하기보다는 현재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9

참고 1

공공도서관 건립 비용 추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유형 A (2,500㎡ 미만)	유형 B (2,500 ~ 5,500㎡)	유형 C (5,500㎡ 이상)
도서관면적(예시) (연면적의 합계)		1,500㎡	2,500㎡	5,500㎡
공사비		6,988,500,000원	9,745,000,000원	22,533,500,000원
공사비 산출근거		$\text{평균단가}('22.8 \text{ 기준}) \times \text{건설공사비지수} \div 115.64('19.8 \text{ 기준 건설공사비지수})$ $\times (\text{평균단가}) 3,674,400\text{원}(\text{유형A}), 3,074,077\text{원}(\text{유형B}), 3,231,276\text{원}(\text{유형C})$		
공사비 단가*		4,659,000원/㎡	3,898,000원/㎡	4,097,000원/㎡
설계비		395,851,143원 (263,901원/㎡) (적용비율: 5.664322%)	544,466,793원 (217,787원/㎡) (적용비율: 5.58714%)	1,215,606,838원 (221,019원/㎡) (적용비율: 5.394665%)
설계비 산출근거**		$\text{공사비} \times (5.72 - (((\text{공사비} - 50\text{억}) \times (5.72 - 5.58)) / (100\text{억} - 50\text{억}))) / 100$		
세 부 내 역	계획설계	79,170,229원 (20%)	108,893,359원 (20%)	243,121,368원 (20%)
	중간설계	118,755,343원 (30%)	163,340,038원 (30%)	364,682,051원 (30%)
	실시설계	197,925,571원 (50%)	272,233,397원 (50%)	607,803,419원 (50%)
	계	395,851,143원(100%)	544,466,793원(100%)	1,215,606,838원(100%)
감리비		81,337,467원 (54,225원/㎡) (적용비율: 1.1638759%)	111,646,808원 (44,659원/㎡) (적용비율: 1.145683%)	249,719,210원 (45,403원/㎡) (적용비율: 1.10821315%)
감리비 산출근거**		$\text{공사비} \times (1.18 - (((\text{공사비} - 50\text{억}) \times (1.18 - 1.14)) / (100\text{억} - 50\text{억}))) / 100$		
1관당 건립비		7,465,688,610원	10,401,113,601원	23,998,826,048원
		※(산출근거) 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 (부지매입비 등 미포함)		
전체 건립비		126,916,706,370원	176,818,931,217원	407,980,042,816원
		※(산출근거) 1관당 건립비 × 17개 시·도		

* 공사비 단가 출처 :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2022)

** 설계비·감리비 산출 : 대한건축사협회 대가산정계산프로그램(

참고 2

17개 시·도 광역대표도서관 현황

(2024.12. 기준)

지역	도서관명	지정 및 설립
서울	서울도서관	2012. 9. 28. 설립
부산	부산도서관	2021. 11. 1. 설립
대구	(기존)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2011. 3. 1. 지정
	(신규)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중(~2025.10.)
인천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2008. 4. 1. 설립
광주	(기존)광주광역시립도서관	2010. 12. 21. 지정
	(신규)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중(~2026)
대전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2007. 9. 20. 지정
울산	울산도서관	2018. 4. 26. 설립
세종	세종시립도서관	2021. 11. 11. 설립
경기	(기존)수원시선경도서관	2015. 1. 2. 지정
	(신규)경기대표도서관	건립 중(~2025)
강원	춘천시립도서관	2018. 11. 26. 지정
충북	청주시립도서관	2020. 1. 2. 지정
	(신규)충북대표도서관	건립 중(~2029)
충남	충남도서관	2018. 4. 25. 설립
전북	(기존)전북도청도서관	2010. 11. 22. 지정
	(신규)전북대표도서관	건립 중(~2027)
전남	전라남도립도서관	2011. 10. 20. 설립
경북	경북도서관	2019. 11. 13. 설립
경남	경남대표도서관	2018. 2. 12. 설립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2008. 11. 13. 설립

자료: 문화체육관광부